

보도시점 2026. 10. 22.(목) 조간
2026. 10. 21.(수) 12:00

배포 2026. 10. 21.(수)

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관리체계 개선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여, 2027년부터는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참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 노인친화기업 사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기업에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2011년~), (조건:매년 최소 5명 노인 고용)

노인친화기업 지정은 매년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최소 30% 이상 투자 시 선정 심사 득점 가능)하여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지정되어 운영된다.

< 유형별 비교 >

구분	노인채용 기업(창업형)	노인친화기업·기관(지정형)
지원내용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3억 원	개소당 최대 2억 원
지정개수 (‘21~’26년 현재)	19개	218개

2022년부터 기존 창업형 지원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창업형에 맞추어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대표자 이외에는 근로자로 분류해 요건을 간소화하였다.

* 임원의 경우에도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의 기업에서 확인되어, 고용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2022년 지침 변경사항>

구분	~'21년	'22년~
이행 계약서	○ 노인친화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관계자, 임원은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 노인친화기업의 대표자는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변경 사유	※ 노인 채용기업(창업형)의 경우 신청기업(모기업)과 경영 분리가 필수적, 신규 설립 기업의 독립적 운영 확인 위해 대표자,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노인친화기업·기관의 경우 기존 기업으로 엄격한 관리 불필요 과도한 점검, 자료요구는 기업 부담 초래, 간소화 시행	

지침 변경 이후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 고용 역량이 높은 유망 기업 다수가 유입되었고, 고학력·고숙련 경력을 보유한 참여자들이 다수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노인친화기업 참여자 및 월 평균급여 증가 추이>

(단위: 명, 천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8월
참여자 수	1,999	2,489	2,916	2,624	2,626	2,477
월 평균급여	1,230	1,587	2,118	2,535	2,782	3,087

다만, 최근 사업 점검 결과 참여자 중에 고위직·임원, 고소득자들이 일부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2027년 지정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 지정유지 요건에 대표자뿐만 아니라 동기임원, 고소득,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

하는 한편, 노인친화기업이 고용한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 ▲ 등기임원, 고위직, 고소득,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적 제한
 ▲ 참여자 정보 및 고용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개선 ▲ 실적인정 심사 및 사후점검 강화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및 노인친화 환경 조성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
 2.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044-202-3477)
<협력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책임자	부 장	진혜림 (02-6329-6911)



□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 실적인정 제외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지침·이행계약서·각종 서식 전반 재검토 및 개정 적용('27년~)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확인 방법)
고용실적 (5인 이상)	대표자만 제외 (사업자등록증 확인)	■ 대표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
		■ 등기임원 제외	■ 등기부등본
		■ <u>기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 제외</u> *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u>기업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 지배구조 등 전반 확인, 검토(중앙심의위원회)</u>

□ **관리체계 개선**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통해 참여자 정보, 고용실태 주기적 모니터링
- 고용현황, 참여자의 실제 직무와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적 고려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판단

※ **노인친화기업 · 기관 중앙심의위원회**

- (구성)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민간전문가 2인 이상 포함해 5인 이상 15인 이내
- (역할) 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 · 기관의 선정, 계약 해지,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 기구

붙임 2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요

□ (목적) 노인의 역량을 지속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설립, 지정

□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3억 원 비용*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노인 채용기업(창업형) 최대 3억 원 / 노인친화기업·기관(지정형) 최대 2억 원 지원

* 노인친화 근로환경 개선 및 초기 투자비, 전문인력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사업관리) 5년(지정연도 제외)

□ (사업규모) 매년 30여 개소 신규선정 목표/ 90억 원

* '26.10월 현재 참여자 237개 기업 2천여 명

□ (사업유형)

사업유형	지원 대상	비고
노인 채용기업 (창업형)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 - (사업운영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 (신규채용) 선정 연도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	
노인친화 기업·기관 (지정형)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 - (사업운영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신규채용) 전년도 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필수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심사 점수 차등 적용

□ 노인친화기업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11~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490	208	45	45	40	62	26	31	33